

공고 제2023-19호

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및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의원이강숙 외 6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, 제31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1. 일시 : 2023년 3월 23일(목요일) 11:00
2. 장소 :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

2023년 3월 16일

동대문구의회 의장

